

[사 건 명] 행심 2018 - 3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2018. 06. 04. 뷰티동아리 시간에 피해학생(▨▨▨▨)이 평소 자신이 앉는 자리에 청구인이 앉아 있어, 피해학생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청구인이 앉지 말라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나. 수업 종료 후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려는 피해학생의 가방을 잡고 끌어당기며 제지하자, 이를 피해서 가려는 피해학생의 머리를 청구인이 잡아 당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다. 2018. 06. 20.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8시간, 출석정지 5일,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의 발단은 ████████의 불성실한 수업태도와 이를 말리는 청구인을 포함한 친구들(■■■■, □□□)에게 ████████이 욕설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나. 청구인이 먼저 ████████의 머리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도 청구인에게 손을 휘두르고 발로 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러한 ████████의 행동도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학폭위에서는 이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양쪽 학생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면, 양쪽 학생 모두 가해·피해학생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공정한 사안조사를 결한 채, 피해학생측의 의견만 반영하여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라. 출석정지 5일 처분은 학생으로서 기본권인 수업권을 침해하고 생활기록부에도 2년 동안 남아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다.

마. 청구인 역시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하다.

바. 청구인이 수업을 마치고 피해학생을 기다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다툼에 대해 대화를 통해 풀어 보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은 오히려 청구인을 향해 ‘왜 구질구질하게 기다리냐’고 비아냥거렸으며, 이는 청구인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다.

사.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처가 나게 했나요?’라는 위원의 질문에 청구인이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머리를 잡아당긴 것에 대한 대답이지 주먹으로 때린 것에 대한 것은 아니다.

아.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배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을 가격하는 정도였고 청구인 또한 피해학생에게 발길질을 당했다.

자. CCTV상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피해학생이 팔을 휘두르며 청구인을 향해 돌진하고, 이에 밀려 청구인은 CCTV상에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 때 피해학생은 청구인을 때리고 할퀴어 청구인의 팔뚝에 상처와 멍이 들게 하였다.

차.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면담·통화한 선생님들은 이 사건을 상호간의 다툼으로 인지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피해학생의 주장에만 경도되어 청구인의 일방적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본 사건은 청구인의 일방적 폭력행위로 볼 수 있다.

- 피해학생은 싸울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각하였던 점.

-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기다렸고 앞을 막아서고 가방을 잡아 끌어당기고, 머리카락을 잡고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심각한 폭행행위를 한 점.
- 사안조사 시 CCTV확인 결과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일방적 폭력이 일어났음이 확인된 점.
- 사안조사 시 최초 목격학생 진술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때렸을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을 하였던 점.

나.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4점(매우높음), 지속성 2점(보통), 고의성 3점(높음), 반성정도 3점(낮음), 화해정도 3점(낮음) 총 15점에 해당하여 제7호 학급교체에 해당하나, 가·피해학생이 같은 반 학생이 아니고, 청구인도 반성하고 있어 경감된 제6호 출석정지를 결정하였고, 폭력행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제5호 특별교육(8시간)조치와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긴급조치 결정이 추인되어 본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 피해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사실에 다툼이 있음)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폭력을 행사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그에 따른 교육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출석정지 기간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석정지 처분은 졸업 전에 학폭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도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주먹으로 때렸고, 코피가 났으며, 이는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하였다.

- 바.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면 이를 부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네’ 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바, 머리를 잡아당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답변이었지 주먹으로 때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 사. 청구인이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목격 학생의 진술서는 본 사건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된 진술서이다.
- 아.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 담당 교사는 회의 당시 내용을 현장에서 기록하고 추후 녹음된 내용을 듣고 다시 확인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회의록은 왜곡되어 있지 않다.
- 자. 청구인의 가해행위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진술, 목격학생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역시 피해학생을 때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말로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였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등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06. 04. 뷰티동아리 시간에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평소 앉는 자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수업 종료 후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려는 피해학생의 가방을 잡고 끌어당기며 제지하자, 피해학생이 이를 피해 가려 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해가려 하는 피해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안쪽을 가격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가방을 잡아 끌어당기며 제지하고, 피해가려 하는 피해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안쪽을 가격하는 등 이 사건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심각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 등은 청구인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등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정도가 부족한 점,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는 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

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10시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 라)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형평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10시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